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태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4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17.

발 의 자 : 안태준 · 박용갑 · 정준호
맹성규 · 한준호 · 문진석
소병훈 · 조계원 · 윤종균
이광희 · 염태영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부설주차장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
그런데 「건축법」 등 다른 법률에서는 부지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도 건축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, 부설주차장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「주차장법 시행령」은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반드시 그 부지 또는 건축물(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)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부설주차장의 설치 요건 중 부지·건축물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,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

는 경우에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, 시설물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 19조제5항 신설 등).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5항부터 제1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부지의 소유권(주차 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말한다)을 확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부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21조의2제2항제1호 중 “제19조제5항에”를 “제19조제6항에”로 한다.

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“제19조제9항에”를 각각 “제19조제10항에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

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·지정) ① ~ ④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9조(부설주차장의 설치·지정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시 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 장을 설치하는 경우 부설주차 장을 설치할 부지의 소유권(주 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의 소유권을 말한다)을 확보하 여야 한다. 다만, 그 부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을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⑤ ~ ⑭ (생 략)	⑥ ~ ⑮ (현행 제5항부터 제1 7항까지와 같음)
제21조의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 치 등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·광 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 치도지사·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 음 각 호의 재원(財源)으로 조	제21조의2(주차장특별회계의 설 치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성한다.

1. 제9조제1항 및 제3항,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

2. ~ 9. (생략)

③ ~ ⑧ (생략)

제32조(이행강제금) ①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: 제19조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

2.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

-.
1. -----

-----제19조제6항-----

2. ~ 9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이행강제금) ① -----

-----.

1. -----

-----제19조제10항-----

2. -----

지하지 아니하는 경우: <u>제19</u> <u>조제9항에</u>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 센트 ② ~ ⑦ (생략)	----- <u>제19</u> <u>조제10항에</u> ----- ----- -----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-